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합18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강민국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광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원고에게 167,261,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8. 31. 접수 제239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A,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A, E가 F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차 보증계약’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과목	대출 은행	대출금액(원)
1차 보증	A	2013. 7. 17.	81,000,000	2014. 7. 17. (2019. 7. 12.)	기업일반 자금대출	F 은행	90,000,000
2차 보증	E	2016. 10. 21.	170,000,000	2017. 10. 20. (2019. 10. 18.)	중소기업 자금대출	중소 기업 은행	200,000,000
3차 보증	E	2016. 11. 28.	85,000,000	2017. 10. 20. (2019. 10. 18.)	중소기업 자금대출	중소 기업 은행	100,000,000

2) A가 2016. 9. 7. E를 설립함에 따라, 제1차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A에서 E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인 E는 보증인인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참가인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및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대위변제

1) E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 2013. 7. 19. F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 2016. 11.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2) E는 2018. 12. 12.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52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8. 12. 31. F은행에 77,159,367원, 중소기업은행에 256,189,7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참가인은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해 3,262원의 확정손해금, 1,794,380원의 대지급금을 각 지출하였다.

4) 참가인은 A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13. 지급명령을 받았다. A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A는 E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331,289,541원과 그 중 329,500,909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56320 판결).

다. A의 재산처분행위

1) A는 2018. 11. 7.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18324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합계 352,800,000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은 2018. 11. 16. 주식회사 G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300,738,724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A는 2018. 8. 30.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8. 31. 접수 239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A의 파산과 소송수계

1) A는 2021. 4. 20.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27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에 따라 참가인이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가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또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고, 피고 C에게 가액배상으로 167,261,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게는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피고 C이 매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외에도 피고 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사건이 계속 중이었는데, 위 각 사해행위취소사건이 피고 C이 청구금액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통하여 확정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67,261,276원을 위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9. 21.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743호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며, 참가인, 피고 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 공탁금 전부를 출급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참가인의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4개월 전인 2018. 8.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E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거래처인 피고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1, 23호증,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 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5457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1411호로,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각 관련사건’이라 한다).
- 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소송절차의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1. 7. 기준 시가는 357,000,000원, 2020. 6. 5. 기준 시가는 468,000,000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밝혔다.
- ③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20. 7. 16.자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3,58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22. 이 사건 매매계약이 107,221,658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된 것으로 보고, 피고 C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⑤ 피고 C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743호로, 167,261,276원을 피고 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참가인 등 취소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하였고, 피고 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참가인은 2021. 4. 30. 위 공탁금을 공동으로 출급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각 관련 사건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2020. 9. 18.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167,261,276원(=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6. 5.자 감정평가액 468,000,000원 - 주식회사 G 근저당권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300,738,724원)을 전액 공탁하고, 취소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각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조서의 취지에 따라 가액의 회복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앞의 각 관련 사건과 중첩되는 공동담보가액 전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공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67,261,276원은 각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 또는 조정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사해행위취소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참조). 따라서 후행 소송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17경부터 E에 합성수지 제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약 142,620,000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었다. 피고 회사는 E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E는 대표이사 A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② 피고 회사는 2018. 8.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8. 9. 4. E에 20,9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11. 28. 24,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등 합계 4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반면 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9,990,000원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는 E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약 100일 전으로, 그 무렵 E나 A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 D의 추가 물품공급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가액과 물품공급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염혜수, 판사 조호연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I동 제24층 J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68.8507㎡

2층 ~ 24층 각 431.9642㎡

25층 ~ 29층 각 215.134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4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2813㎡

2. 충청남도 논산시 L 대 370㎡. 끝.

